강원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원입법 · 정책 동향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제272회 임시회(2018. 4.10.~ 4.18.)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운 영 위 원 회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원안
기획행정 위 원 회 (6건)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신영재 의원 남평우 의원 신도현 의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안상훈 의원 최성현 의원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경제건설 위 원 회 (2건)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영승 의원 최성현 의원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교 육 위 원 회 (5건)	강원도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교육감	원안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내용소개

▣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신영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천)
■ 공동발의: 남평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인제)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국도44호선 통행량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힐링가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통행량 증대, 관광수요 창출 등 정책수립과 예산확보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자동차 통행량 증대, 안내 ·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과 모범모델 발굴, 이용홍보자료 제작, 이벤트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재 의원은 "국도 44호선 구간을 아름다운 경관 이미지에 부합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 명품 관광도로로 조성 · 관리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신영재 의원

남평우 의원

신도현 의원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춘천3)
■ 공동발의: 최성현 의원(경제건설위원회 자유한국당 춘천2)

안상훈 의원

최성현 의원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설치, 심의 · 자문 사항, 구성, 위원회 운영, 기획단 설치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훈 의원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1998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곽영승 의원(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평창)
■ 공동발의: 최성현 의원(경제건설위원회 자유한국당 춘천2)

곽영승 의원

최성현 의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강원도가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발전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영승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보안구역 교통통제 및 스키장 전면 올림픽 경기장 사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개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상인의 경기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일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